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58957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중국인 C

변론 종결 2018. 9. 21.

판결 선고 2018. 10.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399,308원 및 그 중298,589,040원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3.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6,27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6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번호 D, 보증기한 2018. 2. 27., 보증금액 297,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대출금액 3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 B은 2017. 2. 28.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10. 11. 이 사건 대출의 이자 연체에 따른 원금을 연체함으로 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7. 11. 27.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298,663,91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74,87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 810,248원을 지출하였고, 확정손해금은 2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9. 20. 피고 중국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9.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7. 9. 20.) 기준으로 시가 864,000,000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30,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당시
피담보채무 액수는 411,230,000원이었다. 그 밖에 피고 B은 당시 하나는 행에 대하여
32,911,000원의, KB 캐피탈에 대하여 26,00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피고 B은 2017. 9. 22. 피담보채무 411,230,000원을 변제하여 같은 달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018. 8. 10. 기준으로 9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중국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등 청구는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99,399,308원[=
298,589,040원(= 위 298,663,910원 - 위 74,870원) + 위 810,248원 + 위 20원] 및그 중 위
298,589,0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인 2018. 3.
9.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21일 후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원고의 대위 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470,148,000원(= 위 411,230,000원 + 위 32,911,000원 + 위 26,007,000원)에 달한 반면, 적극재산은 432,000,000원(= 위 864,000,000원 $\times$ 1/2)에 불과하여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 B이 무자력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그 처분행위가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C의 악의가 추정되는데 이를 뒤집고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77,500,000원(= 955,000,000원 × 1/2)이고, 그 말소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액수는 411,23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66,270,000원(= 위 477,500,000원 - 위 411,2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성재민, 판사 편병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1. 1동의 건물의 표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

제310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공동주택(아파트)

지3층 40.42㎡

1층 614.28㎡

2층 565.47㎡

3층 565.19㎡

4층 564.9㎡

5층 564.62㎡

6층 564.62㎡

7층 564.62㎡

8층 564.62㎡

9층 564.62㎡

10층 564.62㎡

11층 564.62㎡

12층 564.62㎡

13층 564.62㎡

14층 564.62㎡

15층 564.62㎡

16층 564.62㎡

17층 564.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제6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0.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53060.2㎡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51099.6㎡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43114.6㎡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9995.1㎡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1818.5㎡

대지권종류 : 1, 2, 3, 4, 5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59088분의 66.4797

끝.